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474호 2019. 3. 6.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9-36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5
- 정선군 고시 제2019-41호 도로명 변경 고시.....8
- 정선군 고시 제2019-42호 정선 덕우리 시군창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9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9-209호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주민 재공람·공고.....12
- 정선군 공고 제2019-235호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고.....23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9-36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2월 28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정선군 정선읍 일원 상습 교통정체 및 주차난 등으로 주민 및 내방객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됨에 시가지 교통량 분산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나. 위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 모			폭원 (m)	연장 (m)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중로	2	6	15	490	보조 간선 도로	소로 1-20 봉양리361-1제	중로1-10 봉양리65-4장	일반 도로	정선군 보건소	강고 2010-228호 (2010.07.23)	-
변경	소로	1	22	10	224	집산 도로	중로1-3 봉양리65-4도	소로 1-3 봉양리65-4도	일반 도로	정선군 보건소	강고 2010-228호 (2010.07.23)	-
신설	중로	2	8	15	465	보조 간선 도로	소로 1-20 봉양리361-제	소로 1-3 애산리550-4제	일반 도로	-	금 회	-
신설	중로	3	9	12	191	보조 간선 도로	소로 1-3 애산리550-7대	중로1-3 애산리539-4도	일반 도로	-	금 회	-
기정	소로	1	3	10	966	집산 도로	소로1-5	중로1-3 애산리605-8도	일반 도로	-	강고15호 (92.2.13)	-
변경	소로	1	3	10	966	집산 도로	소로1-5	중로1-3 애산리605-8도	일반 도로	-	강고15호 (92.2.13)	도로 모퉁이 변경

구분	규 모			폭원 (m)	연장 (m)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소로	1	19	10	264	국지 도로	소로1-5	소로1-17	일반 도로	-	강고174호 (05.7.22)	-
변경	소로	1	19	10	264	국지 도로	소로1-5	소로1-17	일반 도로	-	강고174호 (05.7.22)	도로 모퉁이 변경
기정	소로	2	34	8	54	국지 도로	소로 2-26 애산리532전	소로 2-39 애산리530-2대	일반 도로	-	정고 2010-96호 (2010.07.09)	-
변경	소로	2	34	8	56	국지 도로	중로3-9 애산리531전	소로 2-39 애산리530-2대	일반 도로	-	정고 2010-96호 (2010.07.09)	-
폐지	소로	2	35	8	190	국지 도로	중로1-3 애산리535-2대	소로 1-3 애산리550-7임	일반 도로	-	정고 2010-96호 (2010.07.09)	-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6	소로1-22	· 도로 변경 -B=15m→10m, 감) 5m -L=490m→224m, 감) 266m	· 중로2-8호선 신설에 따라 도로의 기능 및 필요성이 저하되어 기 개설된 현황도로에 맞추어 도로 폭 및 선형 변경
-	중로2-8	· 도로 신설 -B=15m, L=465m	· 정선읍 시가지 내 상습 교통정체로 인하여 주민 및 내방객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시가지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도로 신설
-	중로3-9	· 도로 신설 -B=12m, L=191m	· 정선읍 시가지 내 상습 교통정체로 인하여 주민 및 내방객들이 불편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시가지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도로 신설
소로1-3	소로1-3	· 도로 모퉁이 변경 -폭원 및 연장 변경없음	· 중로2-6호선 변경에 따른 도로 모퉁이 변경
소로1-19	소로1-19	· 도로 모퉁이 변경 -폭원 및 연장 변경없음	· 중로2-6호선 변경에 따른 도로 모퉁이 변경
소로2-34	소로2-34	· 도로 변경 -L=54m→56m, 증) 2m	· 중로3-9호선 신설 및 소로2-35호선 폐지에 따른 도로 접속부 연장 증가
소로2-35	-	· 도로 폐지	· 중로3-9호선 신설에 따라 중복되는 기존 노선 폐지

2)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①	노외주차장	정선읍 봉양리 357-7 일원	1,330	증) 976	2,306	강고제134호 (98.07.11)	
신설	⑫	노외주차장	정선읍 봉양리 138-3 일원	-	증) 1,796	1,796	금회	
신설	⑬	노외주차장	정선읍 북소리 616-1 일원	-	증) 871	871	금회	

○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①	노외주차장	· 주차장 변경 - A=1,330㎡→2,306㎡ 증) 976㎡	· 정선읍 시가지 내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민 및 내 방객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금회 주차장 면적 일부 증가
신설	⑫	노외주차장	· 주차장 신설 - A=1,796㎡	· 정선읍 시가지 내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민 및 내 방객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금회 주차장 신설
신설	⑬	노외주차장	· 주차장 신설 - A=871㎡	· 정선읍 시가지 내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민 및 내 방객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금회 주차장 신설

3)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②	봉양2	소공원	정선읍 봉양리 65 일원	1,687	감) 1,687	-	정고 제2016-25 호 (16.4.15)	-
변경	②	아리랑	문화 공원	정선읍 애산리 560 일원	41,017	감) 73	40,944	강고 제 2013-235호 (13.6.14)	-

○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②	봉양2 소공원	· 소공원 폐지	· 공원구역 내 현황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어 공원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금회 폐지
②	아리랑 문화공원	· 면적변경 - A=41,017㎡ → 40,944㎡ 감) 73㎡	· 중로3-9호선 신설로 인하여 일부 중복되는 공원면적 감소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
생략

정선군 고시 제2019-41호

도로명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7일

정 선 군 수

1. 고 시 일 : 2019. 2. 27. ~ 2019. 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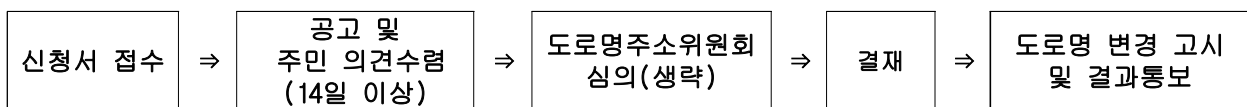
2.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도로명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비고
	도 로 명	기초번호	도 로 명	기초번호		
정선군	소금강로 (1차 종속구간)	548-1→ 548-48	석곡큰골길	1→48	큰골이라는 자연지명 인용	
	옴모탱이길	1→152	오음동길	1→152	예부터 5가지 아름다운 옴을 가진 동네라는 뜻의 지명인용	

※ 자세한 사항 붙임의 도로명 변경 조서 및 도면 참조

4. 도로명의 변경 절차



※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소사용자의 5분의 4 이상 동의하여 신청 시 도로명 주소위원회 심의 생략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민원봉사과 공간정보팀(☎560-21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변경 조서

□ 도로명주소 변경 대상

순번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	북평면 옴모탕이길 6	북평면 오음동길 6	
2	북평면 옴모탕이길 7	북평면 오음동길 7	
3	북평면 옴모탕이길 7-4	북평면 오음동길 7-4	
4	북평면 옴모탕이길 8	북평면 오음동길 8	
5	북평면 옴모탕이길 36	북평면 오음동길 36	
6	북평면 옴모탕이길 38	북평면 오음동길 38	
7	북평면 옴모탕이길 40	북평면 오음동길 40	
8	북평면 옴모탕이길 42	북평면 오음동길 42	
9	북평면 옴모탕이길 50-4	북평면 오음동길 50-4	
10	북평면 옴모탕이길 50-6	북평면 오음동길 50-6	
11	북평면 옴모탕이길 50-10	북평면 오음동길 50-10	
12	북평면 옴모탕이길 53	북평면 오음동길 53	
13	북평면 옴모탕이길 56	북평면 오음동길 56	
14	북평면 옴모탕이길 58	북평면 오음동길 58	
15	북평면 옴모탕이길 60	북평면 오음동길 60	
16	북평면 옴모탕이길 62	북평면 오음동길 62	
17	북평면 옴모탕이길 64	북평면 오음동길 64	
18	북평면 옴모탕이길 70	북평면 오음동길 70	
19	북평면 옴모탕이길 95	북평면 오음동길 95	
20	북평면 옴모탕이길 132	북평면 오음동길 132	
21	북평면 옴모탕이길 150-13	북평면 오음동길 150-13	
22	북평면 옴모탕이길 150-18	북평면 오음동길 150-18	

순번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3	화암면 소금강로 548-11	화암면 석곡큰골길 13-11	
24	화암면 소금강로 548-13	화암면 석곡큰골길 13-17	
25	화암면 소금강로 548-17	화암면 석곡큰골길 17	
26	화암면 소금강로 548-24	화암면 석곡큰골길 24	
27	화암면 소금강로 548-25	화암면 석곡큰골길 25	
28	화암면 소금강로 548-27	화암면 석곡큰골길 27	
29	화암면 소금강로 548-37	화암면 석곡큰골길 33-8	

정선군 고시 제2019-42호

정선 덕우리 시군창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농촌 관광지 인프라 운영모델 구축 및 생태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선 덕우리 시군창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4일

정 선 군 수

1. 사업의 위치 :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마을
2. 사업의 명칭 및 목적
 - 가) 명 칭 : 정선 덕우리 시군창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나) 목 적 : 마을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사업을 통해 농촌 관광지 인프라 운영모델 구축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사업 내용
 - 가) 기초생활기반 : 작은 문학관 및 부대시설 인프라 조성
 - 나) 지역경관개선 : 히스토리텔링 탐방길, 생태탐방길 조성
 - 다)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특화발전계획 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
4.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700 지방비300]
5. 사업 시행기간 : 2018. 01. ~ 2020. 12.(3년)
6. 기대효과
 - 가) 농촌 관광객 관광 인프라 개선을 통한 체류형 관광테마 제공
 - 나) 농촌문화관광 및 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 다) 지역활성화 요소의 수립으로 지속적인 지역발전 기대
7.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8. 위(수)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시사

※ 기타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함 사항은 문화관광과에 비치된 기본계획서 열람 가능
(정선군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 ☎033-560-2569)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9-209호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주민 재공람·공고

정선군공고 제2018-868호(2018.08.21)로 공람·공고한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의 입안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일부 변경사항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주민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8일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2. 위치 : 강원도 정선군 일원(정선읍, 신동읍, 화암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일원)
3.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2019. 2. 28 ~ 2019. 03. 17)
4. 공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5. 공람개요
 - 가.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용도지역 결정(변경) 26건(512,962㎡)
6. 관련도서 및 조서 : “실음생략” (공람장소 비치)
 - 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도면 및 조서
7.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가. 제출기한 : 공람기간 내
 - 나. 제출장소 : 정선군청 도시과,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의한 서면 제출
8. 기타 사항
 -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재공람 · 공고 열람자 의견서

재 공 램 건 명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접수번호	
			접 수 일	2019. . .
공 램 인 인 적 사 항	주 소			
	성 명			
	연 락 처			
토 지 소 재 지	위 치			
	면 적			
	기 타 사 항			
재 공 램 의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따라 재 열람·공고한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인)

정 선 군 수 귀 하

정선군 공고 제2019-235호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 (제2019- 124호)」이 공고됨에 따라, 정선시군 소재 주택을 소유한 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정 선 군 수

1. 지 원 기 간 : 2019. 03. 04.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2. 지 원 분 야 : 태양광

3. 지원예정량 : 약 7호

4. 지 원 예 산 : 25,480,000원

5.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 천원)

원 별	기준	상한액	국비 (국가직접지원)	지방비(도/시군)	비고
태양광	2KW이하	4,600	680/kW (1,360)	1,630(도489, 시군1,141)	
	2 ~ 3KW이하	5,600	560/kW (1,680)	1,960(도588, 시군1,372)	

주) 상기 보조금 지원단가에는 시 및 도의 보조금이 합산된 금액임

6. 지원대상자 선정 (개별주택)

가. 신청시기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그린홈) 사업승인 이후

나. 신청주체 : 사업승인 주택소유자

다. 신청방법 : 정선군(경제과)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라. 선정기준 : 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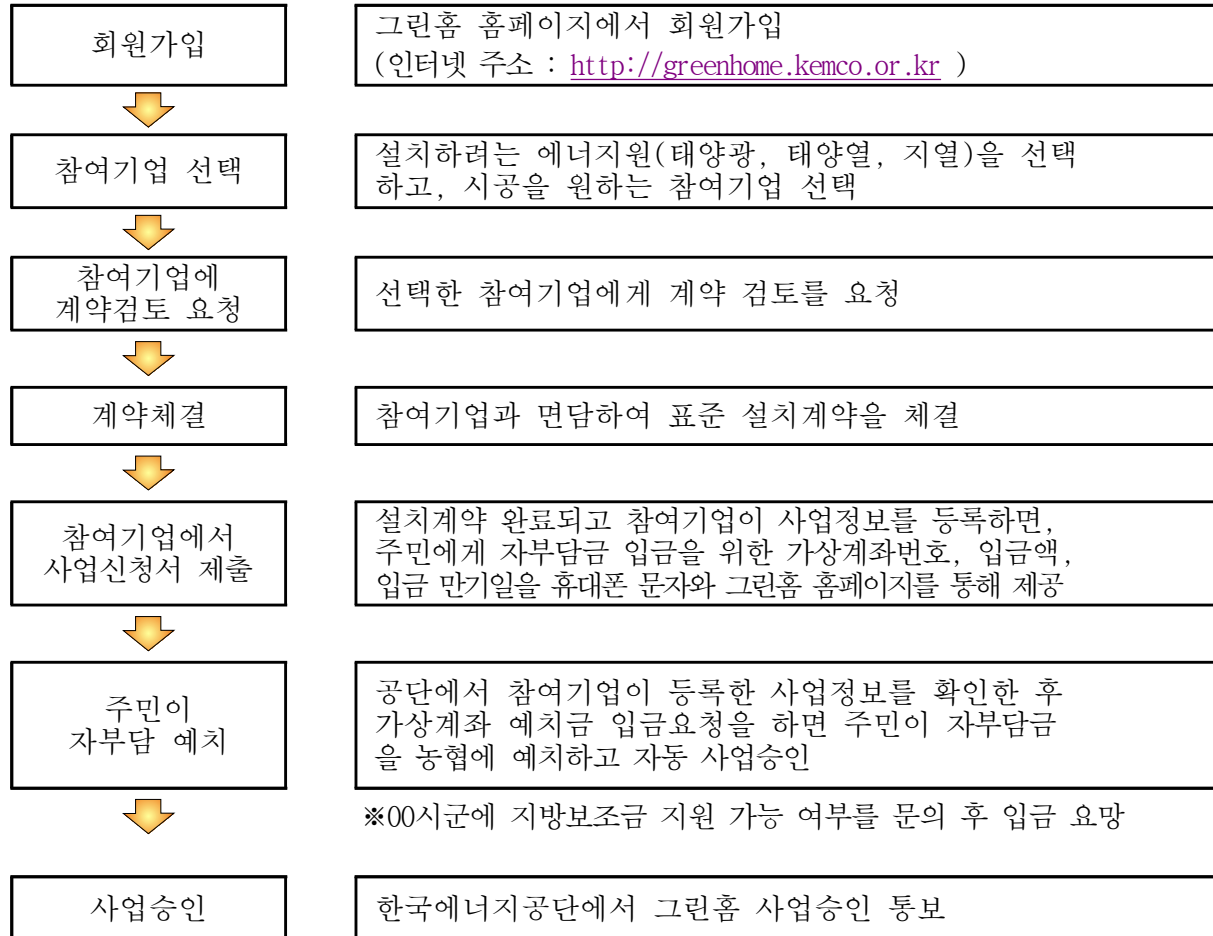
※ 한국에너지공단의 그린홈 사업승인 이후에도, 군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을 양지바랍니다.

※ 따라서,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승인 이후, 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문의 후에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7. 지원방법 : 설비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 주민에게 지방보조금을 직접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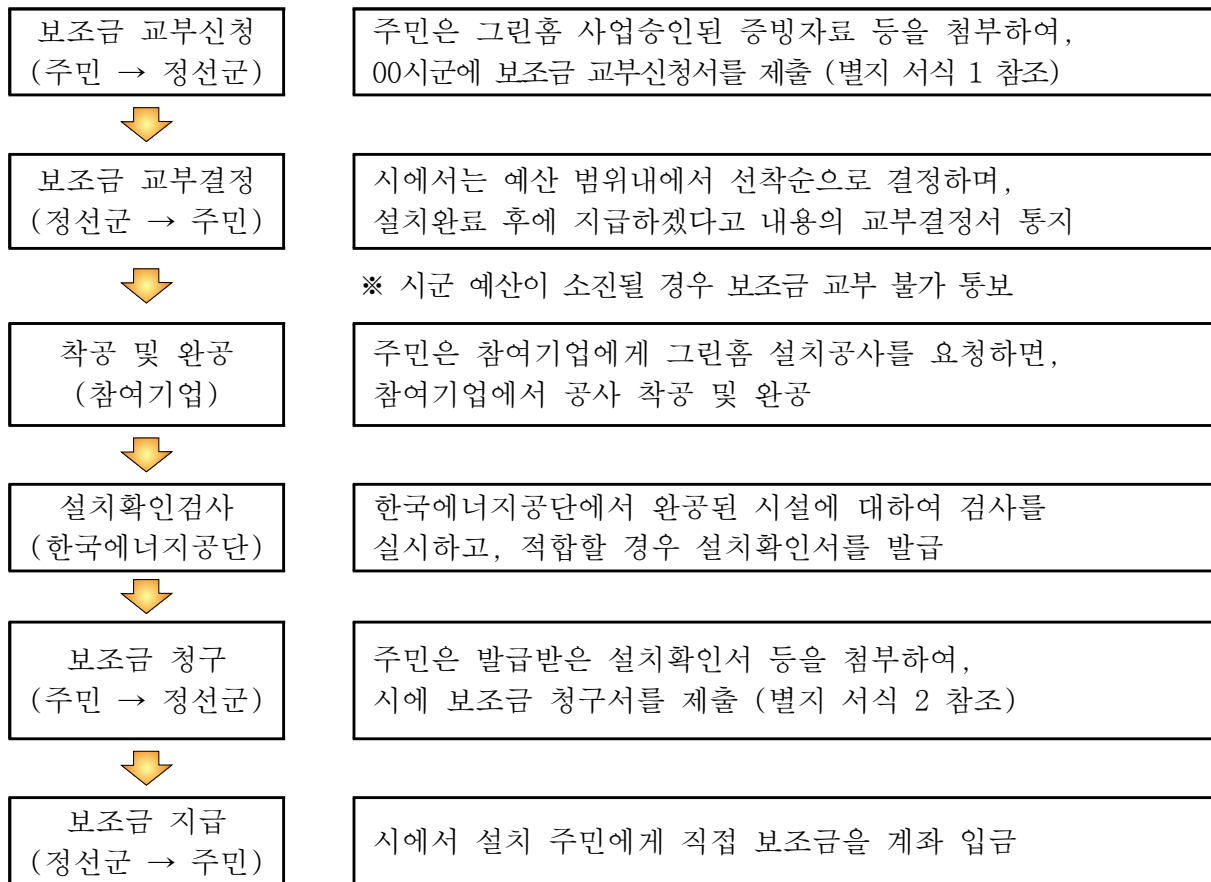
8. 그린홈 사업 추진절차

가.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 절차 (주민이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먼저 신청)



- 주) 1.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승인은 국비보조금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2. 00시군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
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으셔야 하며,
3. 시군 보조금 교부 결정은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나. 시 보조금 지원절차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된 주택만 신청 가능)



※ 국비보조금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참여기업에게 직접 지급

9.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가. 그린홈 설치 희망자는 그린홈(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여야 하며, 시공할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고, 직접 계약하며, 주민 자부담금을 금융기관(농협) 가상계좌에 선예치 하셔야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2019년도 개별주택에 대한 사업신청 접수를 3~4월 중 접수받고 있으며, 사업승인은 선착순으로 진행 될 예정이므로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공단 공지사항 - 사업신청 및 처리일정】

진행내용	1차	2차	공동주택
참여기업 선택 및 계약 체결	3.11.(월) ~ 3.29.(금)	5.13.(월) ~ 5.31.(금)	4.15(월) ~ 4.26(금)
참여기업 서류제출 완료	3.18.(월) ~ 3.29.(금)	5.20.(월) ~ 5.31.(금)	4.22(월) ~ 4.26(금)
서류검토	~ 4.5.(금)	~ 6.7.(금)	~ 5.3.(금)
가상계좌 예치기한 (예치시 사업승인)	~ 4.12.(금)	~ 6.14.(금)	~ 5.10.(금)

* 접수시간 : 매일 10:00 ~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가상계좌 예치 만료일(가상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까지 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 미납 시 사업 자동취소

* 전수기간은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에너지공단 공지사항 - 신청기간별 국비 지원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4월)	2차(5월)	계
에너지원	태양광	25,612	10,977	25,612

다. 2019년 개별주택에 대한 지방비 지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승인된 주택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교부결정하고, 설치 완료 후에 지급할 예정이므로, 사업신청 전에 정선군 경제과에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를 문의 후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비 보조금 지원은 그린홈 설치가 완료되면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신청 당시 금융기관에 선예치하는 주민 자부담금은 실제 자부담액보다 크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태양열 설비 설치 시 한국에너지공단의 시공기준은 물론 도내 태양열 설비 시공기준에 따라 시공된 설비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시공 참여기업별 설치금액, 시공능력, 제품사양 및 효율, 사후관리(A/S)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여기업 선택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주택소유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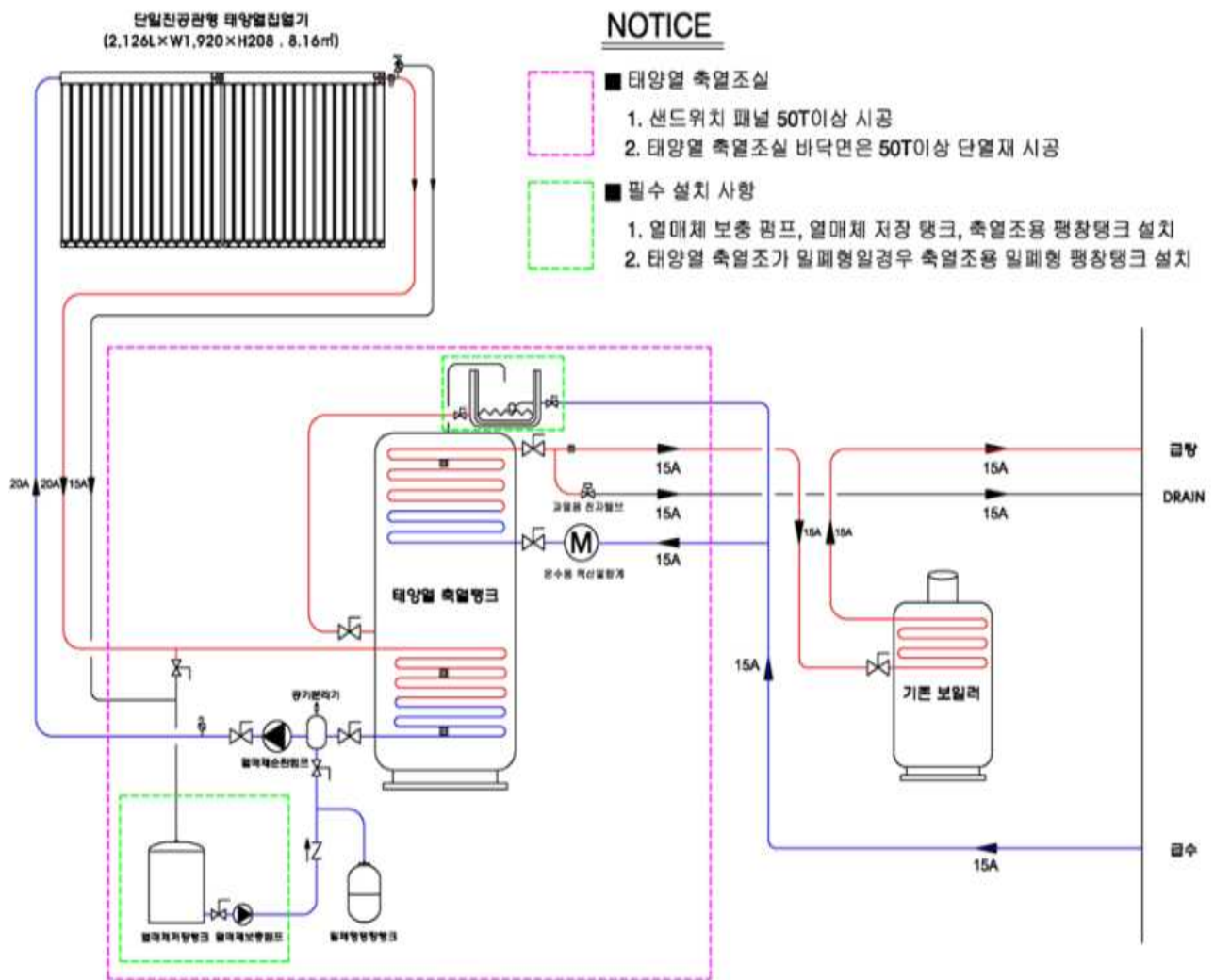
사. 그린홈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 : <http://greenhome.kemco.or.kr>

아. 시군 담당부서 : 정선군 경제과(☎ 033)560-2434)

《태양열(온수전용) 설비 시공 기준》

《 태양열 주요 시공기준 》

- 단열 기준 강화 : 축열조실 샌드위치 패널 50T이상, 축열조 바닥면 50T이상 단열재 시공
- 필수 설치 사항
 - ① 열매체 보충 펌프, 열매체 저장탱크, 축열조용 팽창탱크 설치
 - ② 태양열 축열조가 밀폐형일 경우, 축열조용 밀폐형 팽창탱크 설치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이 완료되는 즉시, 00시군에 보조금 교부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 ☐ 사 업 자 :
- ☐ 사 업 명 : 2019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 교부신청액 : 금 원(금 원)
- ☐ 신청 조건 : 정선군수 교부조건 수용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정선군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관계 규정에 어김없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보조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인)

- 붙임** 1. 사업실행계획서 1부.
2.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표준설치계약서 사본 1부.
3.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승인 전산 증빙서 1부.
(그린홈 홈페이지에 표출되는 사업승인 화면을 캡처하여 출력물을 제시 바랍니다)
4. 설비 설치 도면 1부.(태양열 설비 신청 시)

정선군수 귀하

사업실행계획서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19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 . ~ . . .
- 소요예산

총 사업비	국비 보조금	지방비 보조금	자부담
원	원	원	원

2. 사업목적

정부정책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과 연계한 00시군의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개별주택]」에 참여하여 주택에 그린홈을 설치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조성에 기여

3. 주요사업내용 (그린홈 설치계획)

구 분	사 업 내 용
설 치 주 택 소 재 지	
에 너 지 원	☐ 태양광 ☐ 태양열 ☐ 지열
설 치 용 량	kW(m ²)
참 여 기 업 상 호	
설비형식(태양열에 한함)	☐ 단일진공 ☐ 이중진공 ☐ 평판형

4. 세부추진계획

단위사업명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고
설치공사	2019. 월 ~ 월	○ 그린홈 설치공사 착공 및 완공	
확인검사	2019. 월	○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확인검사 수검	

5. 기대효과

- 에너지 비용 절감에 따른 주민 생활안정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화석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 그린홈 설치가 완료되고 설치확인검사가 끝난 이후, 00시군에 보조금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서류

보조금 청구서

- ☐ 보조사업명 : 2019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개별주택]
☐ 보조사업자 : (주민등록번호 :)
☐ 청 구 금 액 : 금 원(금 원)
☐ 계 좌 번 호 :

상기 금액을 2019년 그린홈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19년 월 일

청구자 : (인)

- 붙임 1. 설치확인서(한국에너지공단 발급분) 사본 1부.
2. 세금계산서(참여기업에서 발급분) 사본 1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본인에 한함) 1부.

정선군수 귀하

※참고사항 - 국비 참여 방법

① 주택에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원 결정(신청자)

 <에너지원 선택>	⇒신청자 주택에 필요한 용도 따라 적합한 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지원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사업소개>,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공고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	---

② 신청자 및 참여업체 간 사전 협의(권고)

 <사전협의>	⇒온라인 계약검토 요청 전 참여시공업체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참여업체 결정 ※신청자는 사전협의를 통해 참여기업의 과대홍보 등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설치용량,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확인요망(최소 2개 업체 이상 협의 요망)
---	---

② 참여기업 결정 및 계약검토 요청(신청자)

 <계약검토 요청>	⇒설비의 설치가능여부,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여기업을 결정합니다.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해당 참여기업으로 계약검토 요청을 합니다. (※ 유선통화 필수) ※계약검토요청은 시공 분야별로 1회에 2개 기업에 한해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이 모두 되지 않은 경우, 다른 2개 기업에 계약검토 요청을 할 수 있음
--	--

③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 체결

 <계약체결>	⇒참여기업이 계약검토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 시, 표준 설치 계약서 내용, 설치용량,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안내받고 확인합니다. 특히, 자부담 금액, 설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고,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	--

④ 사업신청서 제출(참여기업→신재생에너지센터)



<신청서 제출>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 기간을 엄수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제출합니다.

⑤ 사업진행현황 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신청자)

자부담금 예치

사업승인

<자부담금 예치>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적합여부를 평가하여 신청서검토를 완료한 후 신청자에게 가상계좌 예치금 입금요청 및 가상계좌번호 발급안내 SMS를 발송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가상계좌번호를 직접 안내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주택지원 홈페이지 내 신청자마당 → 사업진행현황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가상계좌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가상계좌 만기일(발급한 일로 7일) 내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예치금을 예치합니다.

※가상계좌 만기일(발급한 날로 7일) 내 예치금 미입금 시 사업취소 처리되며, 분할납부 및 기간연장은 불가합니다.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예치금을 예치하시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신청하신 사업에 대해 자동으로 사업을 승인합니다.

⑥ 사업승인(센터)에 따른 설비 설치(참여기업)



<설비 설치>

⇒참여기업은 신청자 주택의 주변 환경 및 기초상태 등을 파악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합니다.

※일조권, 조망권 등 민사상 분쟁에 관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은 에너지원별 사업완료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공고 참조)

⑦ 설치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참여기업, 신청자)



<설치 확인>

⇒설비설치완료 후 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http://www.knrec.or.kr>)

⇒설비설치확인이 완료되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신청자에게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 SMS를 발송하고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 평가 후 예치금 지급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설치완료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는 신청자의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 동의가 없더라도 자동 지급동의 처리되어 참여기업으로 지급됩니다.

⑦ 하자 접수(신청자)



<고장접수지원센터>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사용 중 설비의 하자 발생 시 참여기업으로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이행증권을 확인하시고 보증기간 내에 고장발생 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시공한 참여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참여기업을 통해서 A/S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로 연락하시면 A/S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ascenter.energy.or.kr/>